#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56 발의연월일: 2024. 8. 5.

발 의 자:윤한홍ㆍ권성동ㆍ서일준

서범수 · 김기현 · 김선교

최수진 · 김종양 · 이종욱

김상훈 · 김도읍 · 한기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추후 매수하여 상환하는 신용매도로, 모든 선진 증시에서 널리 허용되는 거래기법임.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됨. 우리나라는 해외 증시와 달리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공매도의 부작용이 더욱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며, 최근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제재 강화 등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

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입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안 제180조의4)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 마지막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공시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여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차익을 얻는 행위를 제한함.

나.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안 제180조의5)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고, 대차 중개기관이 대차계약의 목 적에 따라 상환기간을 구분 관리하도록 함.

다.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안 제180조의6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한 이후 공매도 주

문을 수탁하도록 함.

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확대(안 제407조)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에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고,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리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 함.

마. 지급정지 요구 신설(안 제426조의2 신설)

불법적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벌금 및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였거나 무차입 공매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 유가 있고 금융거래를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권선물위 원회가 계좌 자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신설(안 제426조의3 신설)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사.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및 외국금 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규정 적용 (안 제427조 및 제437조)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전산시스템 구축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차입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과 동일한 조사 및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규정을 적용함.

아.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안 제443조)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징역형을 가중하도록함.

자. 지급정지 조치 누설시 형사처벌 신설(안 제446조)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차. 대차 상환기간 위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지급정지 조치 및 제한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449조)

안 제180조의5에 따른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위반 및 대차 중개기관의 구분 관리 위반, 안 제180조의6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안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위반, 안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등 위반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고, 안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통지 위반 및 안 제426조의3에 따른 거래제한대상자의 요청 관련 처리결과 통보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법률 제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의4 제목 중 "매출에"를 "매출 등에"로, "주식"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권상장법인의주식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0조의5의 제목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을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대차거 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

간을 정하여 그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차입자가 통지한 대차거래의 목적에 따라 상환기간이 제3항에 따르도록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4편제3장에 제18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제180조에 따른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매도(이하 "무차입공매도"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와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7조제1항 중 "주식처분명령을 받은"을 "주식처분명령 또는 제426 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이하 이 조에서 "처 분명령"이라 한다)을 받은"으로,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를 각각 "처분명령을 이행하지"로, "주식을"을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을"로, "주식의"를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의"로 한다. 제426조의2 및 제4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이하 이 조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금융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자 명의의 계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이 본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은 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상당 기간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경우
  - 2. 금융거래를 즉시 정지하지 아니하면 재산이 은닉되는 등 실효성 있는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신속하게 금융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급정지 해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 원회는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갱 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지급정지 중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1. 명의인이 특정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2. 지급정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의한

추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4. 지급정지의 원인이 된 특정 불공정거래에 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 5.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정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급정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⑧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⑨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증권 선물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 하여 제4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자에 대하 여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그 밖의 거래. 다만, 매매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 행책임자(이 경우 "금융회사"는 "주권상장법인등"으로 본다)를 포함한다)으로서의 선임·재임(在任)
-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10년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 다),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 1. 거래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제한대상자가 보유한 금융투 자상품 계좌정보
- 2.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제3항제1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거래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주권상장법인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원선임제한대상자"라 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임원선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에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내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
- 2. 주권상장법인등이 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제한대상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원선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 구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래제한대

상자 통보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한다.

제427조제1항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437조제2항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443조제1항 본문 중 "3배"를 "4배"로, "5배"를 "6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배"를 "6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를 "각 호"로 한다.

제446조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제 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제449조제1항에 제39호의6, 제39호의7 및 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제4항을 위 반하여 구분 관리하지 아니한 자
-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8의2.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48의3.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 48의4. 제426조의3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 48의5. 제426조의3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제한대상자를 임 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제한대 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449조제3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21.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증권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대차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대차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제180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	
집 또는 <u>매출에</u> 따른 <u>주식</u> 취	집 또는 <u>매출 등에</u> 따른 <u>증권</u>	
득 제한) (생 략)	취득 제한) <u>①</u>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	
	채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	
	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	
	안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	
	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	
	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채 발행	
	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서는 아	
	<u>니 된다. 다만, 전환가액 또는</u>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	제180조의5( <u>차입공매도를 위한 대</u>	
<u>차거래정보 보관 등)</u> ①·② (생	<u>차거래</u> ) ①·② (현행과 같음)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③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대 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여 그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주 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차입자가 통지한 대차거래의 목 적에 따라 상환기간이 제3항에 따르도록 구분 관리하여야 한 다.
-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 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 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 인은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 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 설비를 갖추는 등 제180조에 따 른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공매도(이하 "무차입공매 도"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 터 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 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 처분명령을 받은 후 그 기한 이 내에 그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 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하고, 그 기한까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 |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 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다.

<신 설>

바에 따라 그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야 하는 법인의 범위와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 주식 처분명령 또는 제426조의3제7 의 처분명령(이하 이 조에서 "처분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 그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 증권선

물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 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

의4(이하 이 조에서 "특정 불공 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위반하 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고 금융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 고 의심되는 자 명의의 계좌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 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 제2 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 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 원회위원장이 본문의 조치를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 위원회위원장은 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증권선물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 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상당 기간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2. 금융거래를 즉시 정지하지

아니하면 재산이 은닉되는 등 실효성 있는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곤란할 염려가 있 는 경우

- 3. 그 밖에 신속하게 금융거래 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증권선 물위원회에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급정지 해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 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증권선 물위원회는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 하여 갱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 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

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 융회사에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 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 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지 급정지 중 일부나 전부를 해제 할 수 있다.

- 1. 명의인이 특정불공정거래행

   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

   되는 경우
- 2. 지급정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 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의한 추정보전절차 등이 진행 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 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

- 4. 지급정지의 원인이 된 특정 불공정거래에 관한 과징금, 과 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 5.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정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급정지의 필요성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⑧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 급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 청할 수 있다.
- ⑨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신 설>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4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할수있다.
-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그 밖의 거래. 다만, 매매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등" 이라 한다)의 임원(「상법」 에 따른 집행임원, 「금융회사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 책임자(이 경우 "금융회사"는 "주권상장법인등"으로 본다) 를 포함한다)으로서의 선임· 재임(在任)

-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하며, 10년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제1 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 보를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 자업자를 포함한다), 금융투자 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통보 할 수 있다.
- 1. 거래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제한대상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계좌정보

- 2.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 <u>간</u>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
-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래제한대상자로 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같은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제한 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제3항제1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거래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 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권선물위원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주권상장법인등은 제1항제2 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 재임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 에서 "임원선임제한대상자"라 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 다. 임원선임제한대상자가 임원

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 에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내리는 해당 금 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
- 2. 주권상장법인등이 제6항 전 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 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 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원선 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래제 한대상자 통보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의2부터 제1 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공무원"이라한다)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있다.

#### ② ~ ⑥ (생 략)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의 정보교환 등)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 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 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는 외국금융투

압수·수색) ①
제1
<u>게</u> 80조의6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의 정보교환 등) ① (현행과 같
<u>이</u> )
②
<u>제180조의6</u>

자감독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 · 범위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료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수 있다.

#### ③ ~ ⑤ (생 략)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이하인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한다.

<u>.</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3조(벌칙) ①	
4ुमी -	<u>б</u> н
	<u> 6배</u>

- 1. ~ 10. (생략)
- ② 제1항 <u>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u>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가중한다.
- 1. 2. (생략)
- ③ (생략)
-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2. 삭 제 3. ~ 63. (생 략) <신 설>

-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2. 삭 제 13. ~ 39의5.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u>각 호의</u>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46조(벌칙)
<u>.</u>
3. ~ 63. (현행과 같음)
64.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
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
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
<u>자에게 누설한 자</u>
제449조(과태료) ①
<u>.</u>
13. ~ 39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40. ~ 4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 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 나, 제4항을 위반하여 구분 관 리하지 아니한 자

39의7.제180조의6제1항또는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40.~ 48. (현행과 같음)

48의2.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8의3.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8의4. 제426조의3제4항 전단을위반하여거래제한대상자의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한자

48의5. 제426조의3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9. (생략)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9. (생 략) <신 설>

<신 설>

④ (생략)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9.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_\_\_\_\_\_
- 1. ~ 19. (현행과 같음)
- 20.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21.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 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 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 ④ (현행과 같음)